

# 美國公共圖書館의 奉仕活動에 미친 聯邦政府의 役割에 關한 考察

—LSA와 LSCA를 中心으로—

崔 達 鈜\*

## 目 次

|                       |                   |
|-----------------------|-------------------|
| I. 序 言                | IV. 兩法의 成果 및 그 性格 |
| II. LSA와 LSCA의 歷史的 背景 | V. 兩法制定에 關한 ALA活動 |
| III. LSA와 LSCA의 内容    | VI. 結 言           |

## I. 序 言

20世紀 產業社會에 들어와서 急速度로 成長한 經濟的 政治的 發展은 政府로 하여금 市民生活에 積極的으로 介入하도록 만들었고 政府의 計劃과 決定은 市民生活에 크게 影響을 미치게 되어 市民은 直接的이든 間接의이든 그에 依存하지 아니하고는 어찌한 生活도 獨自的으로 賦爲하여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巨大한 社會組織과 情報革命속에 살고 있는 오늘날, 모든 市民의 複雜하고 多樣한 個人的 社會的 欲求追求過程에서 蒙起되는 必要를 充足시켜줄 圖書館의 發展도 圖書館 奉仕의 社會貢獻度를 높이 認識하고 있는 政府의 積極的인 施策에 依存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事實 지금까지는 圖書館의 斷片的 發展이 偶然한 일로 政府關心을 嘘起시켰을뿐 政府 스스로의 意思決定에 依하여 圖書館에 對한 關心을 促進한 것은 아니었다.<sup>(1)</sup> 그러나 政府의 活動範圍가 넓어지고 또 國民의 福祉와 安全 및 國家의 知的 文化的 成長에 對한 關心度가 增大함에 따라 各國은 大量化 多樣化하고 있는 國力의 하나로서의 知的資源의 維持와 持續的인 發展을 國家의in 次元에서 圖謀

\* 慶北大學校 文理科大學 圖書館學科

(1) G. Jefferson, *Libraries and Society* (Cambridge: James Clarke, 1969), p. 103.

## 2 도서관학 논집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知識의 爆發로 因한 出版物의 泛濫, 많은 經費와 專門的인 知識을 必要로 하는 電子計算機, 마이크로 및 視聽覺機器, 電氣通信等 서로운 情報技術은 이제는 하나의 圖書館 또는 圖書館群으로서는 解決 할수 없는 많은 問題를 溢起시켰고 政府는 全體國家의in 水準에서 이 새로운 技術을 情報奉仕活動에 迅速하게 効果的으로 導入하여 情報處理의 成功을 圖謀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國家全體의計劃을 세우자 않으면 國家의 教育構造의 弱化와 知的에너지의破壊하기로 情報의 混亂狀態(Information Chaos)<sup>(2)</sup>에 直面하게 될 것이다. 即 情報(Information)을 國家資源으로 다루는 政府政策,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枯息的인 政策라는 대로 政府의 새로운 投資政策과 奉仕哲學이 緊要하게 되었다. 이전하여 오늘날 各國은 저마다 議會의 立法活動 또는 行政政府의 積極的인 活動으로 級的資源의 保存, 增進, 普及에 國家的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國家情報政策과 級機觸의 重要性을 立證하는 情報管理計劃은 이미 英國, 西獨, 노르웨이, 日本等 著은 國家에서 實施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 人類가 納積하여온 知的, 社會的, 技術的, 精神的, 文化的遺產에 對한 浪費없고 効果的인 最大 接近率이 社會의 發展을 이룩할 수 있음이 오늘날 實證되었기 때문이다.

美國도 建國以來 聯邦政府는 主로 外交 및 軍事을 中心으로 聯邦國家存立에 必要한 最少限의 中央統治를 實施하여 왔으나 Roosevelt 大統領의 New Deal政策에서 비롯한 計劃經濟, 社會保障制의 實施以來 聯邦政府의 機能은 漸大膨脹過程을 밟아 왔고, 따라서 地方政府의 聯邦政府에의 依存度 또한 漸增되어 왔다. James G. Igoe에 依하면<sup>(3)</sup> 聯邦政府의 地方政府(州政府包含)에 對한 資金支援이 1946年에는 10억불이었던 것이 1971年에는 300억불에 이르고 있어 위의 現象을 端的으로 보여주고 있다. 聯邦政府의 圖書館奉仕活動에 對한 關心乃至 支援에 있어서도 1966年부터 1967年에 걸쳐 實施된 Nelson一團의 美國公共圖書館시스템 調查研究에서 밝혀진 바에 依하면<sup>(4)</sup> 58個의 標本圖書館 시스템<sup>(5)</sup>에 對한 運營資金의 가장 큰 財源은 地方政府(County

(2) The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NCLIS), *Toward a National Program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Goals for Action* (Washington, 1975), p. 5.

(3) James G. Igoe, "Federal Grants and Public Libraries," In *Advances in Librarianship*, ed. by Melvin J. Voigt, Vol.3 (New York: Seminar Press, 1972), p. 137.

(4) Nelson Associates for the Public Library Associati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ublic Library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 Survey of Multijurisdictional Systems* (Chicago: ALA, 1969).

(5) ALA는 公共圖書館基準에서 公共圖書館시스템을 協定에 依하여 獨立된 行政單位를 形成하게

Government)이 있으나<sup>(6)</sup> 가장 急速히 成長하는 둘째의 財源은 聯邦政府로 나타나고 있다. 即 시스템의 初年에는 全體 시스템의 5.2%에 不過한 3個의 시스템만이 運營資金의 第2供給源으로서 聯邦政府를 들고 있으나 調査年度인 1966년에 이르러서는 19%인 11個館으로 增加하고 있다.<sup>(7)</sup> 圖書館奉仕活動에 있어서 聯邦政府의 比重이 커지고 漸次로 聯邦政府가 이 分野에 關心을 기울이게 된것은 美國圖書館發展史上 가장 強力한 立法인 1956年の 圖書館奉仕法(LSA: Library Services Act)이 制定되던 1950年代라고 생각된다. 美國의 圖書館發展은 지금까지는 自治的 또는 카네기財團과 같은 篤志家의 助援에 依하여 이루되어 왔으나 이 法이 制定됨에 따라 一大轉換期를 이루게 되었고 70年代에 들어와서는 國家發展計劃의 一環으로서 圖書館의 長期的 發展計劃을 謂謀하게 되었다.

오늘날 國際社會에서 가장 눈부신 發展을 하고 있는 美國의 公共圖書館奉仕活動은 戰後 20餘年間에 걸친 圖書館立法活動과 聯邦政府의 繼續的 財政支援이 있음으로서 그 領域을 擴大시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LSA와 1964年の LSCA(Library Services and Construction Act: 圖書館奉仕 및 建築法)는 이러한立法活動의 中核을 이루는 法律로서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對한 護系의 調査研究論文이 寡聞의 탓인지 아직 찾아 볼수가 없었다.<sup>(8)</sup> 本論文에서는 戰後 美國의 公共圖書館의 劇期의 發展을 가지고 오게 한 LSA와 LSCA制定의 歷史的 背景과 그 内容 및 効果를 一覽하고 아울러 兩法制定에 있어서의 美國圖書館協會를 비롯한 各界各層의 舉國的努力과 活動樣相을 分析·考察함으로서 우리와 같이 公共圖書館奉仕活動이 微微하고 不振한 나라이 있어서 民族文化의 繼承暢達과 祖國의 近代化에 必須의 으로 寄與할 수 있는 圖書館發展計劃의 推進方向과 그 方法을 模索하고자 한다.

## II. LSA와 LSCA의 歷史的 背景

### 公共圖書館에 對한 聯邦政府의 關係는 1895年 議會가 政府刊行物을 無料

나 11個의 이과한 行政單位를 構成하여 共同으로 活動하는 公共圖書館奉仕群으로 规定하는 가관  
법 Book Annual of Library and Book Trade Information 1976에 依하면 特定管轄區域內 모든 公共圖書館의 基本의 運營을 統制하기 为하여 中央集中國財政制度와 共通의 政策을 遂行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p. 239) Nelson의 前揭書에서는 省고을, 市, 郡, 州 以上에 걸쳐 奉仕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市 또는 고을에만 奉仕하는 圖書館과 分館은 包含시키지 않고 있다. (p. 2)

(6) 58個의 시스템 가운데 1966年現在 43.2%에 이르는 25個의 圖書館이 運營資金의 가장 큰 供給源으로서 地方政府를 들고 있다. (Nelson, 前揭書, p. 68, 表 29.)

(7) Nelson, 前揭書, p. 69, 表 32.

(8) Frank L. Schick, “最近의 美國圖書館關係立法” 張一陞 譯, 도서관 122(1967, 12).

#### 4 도서관학 논집

로受領할 수 있는保管所(Depository)로서 637개<sup>(9)</sup>의大學與公共圖書館을指定토록立法化한 것이 처음이었다. 20世紀에 들어와서兩次의世界大戰과 30年代의世界大恐慌은 곳에 따라서는公共圖書館의對外奉仕活動豫算을削減하는結果를 가지고 으례도 하였으나聯邦政府의圖書館의對外奉仕을開心と支援을惹起시키기도 하였다.恐慌期에 있어서聯邦政府는公共圖書館으로하여금聯邦非常事業計劃(Federal Emergency Program即Works Progress Administration과 National Youth Administration)와의救援對象勞動者를非專門的業務에雇用하고 또한圖書館奉仕가미처지 못하는地域에 이를擴大시킬수 있는資金을支援하였다.<sup>(10)</sup>Jean K. Gates는 “恐慌이繼續된 10年동안에 만일 이들勞動者가 없었더라면圖書館奉仕은 그저萎縮되었을것이고 많은圖書館이門을닫게되었을것이다.”<sup>(11)</sup>라고當時의現況을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37年에는聯邦教育局(United States Office of Education)내에圖書館奉仕部(Library Service Branch)을創設, 圖書館計劃 및統計作成과各級圖書館에對外情报의센타로서役割을履行하였다. 大戰中에 있어서도 대개의圖書館이職員의不足에困境에 처해연番판아니면軍事產業地區等에增加하는人口에比例하여圖書館奉仕가拡大될수 있었기때문에圖書館에對外認識과需要는그제發展하였다.

二次世界大戰後 25年間은 美國民의社會的認識이高潮한時期였다. 美國은參戰國이자戰勝國으로서各國의再建과民主化는그들의effort하고생각하였고이러한理念의發露가Marshall Plan, NATO, SEATO, Truman大統領의Point Four Program, Kennedy大統領의平和奉仕團等이있다. 한便國內의으로는機會의不均等, 貧困,人種,少數民族, 移民, 公害, 情報의爆發等<sup>(12)</sup>難題가山積하였고이들國內外問題의解決에는廣範한調查와研究가必要한同時에納稅者이자主權者인國民의支持를得는것이先務이었다.換言하면國家는識見있는選舉民이必要하였고政府는市民의

(9) Jean Key Gates, *Introduction to Librarianship*(New York: McGraw, 1968), p.167. The Depository Library Act(1962)는指定을마우로擴大하여結果의으로二數를倍增시켰다.(Edmund Low, "Two Decisions Decades: Federal Consciousness and Libraries," *American Libraries*, Vol.3(Jul/Aug., 1972) p.723).

(10) 1933年 테네시강流域開發公社(Tennessee Valley Authority)는同流域 7個州의地理地圖圖書館(Regional Library)計劃을實踐, 지금까지 아무런圖書館奉仕가 없었던시골에公共圖書館奉仕를擴大하였다. 이로서 1939年에는 300萬以上의人口가圖書館奉仕의혜택을받게되었다.(Elmer D. Johnson, 西歐의圖書館史, 小野泰博譯, (東京:帝國地方行政學會, 1974), p.456)

(11) Gates, 前揭書, p.175.

(12) Low, 前揭書, p.717.

大學(Peoples University)이 公共圖書館을 通하여 그 解決方法을 模索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1948年の “圖書館奉仕를 爲한 國家計劃”(National Plan for Library Service)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美國人口 135,000,000名中 50,000,000名은 年間 37,500弗以上의 收入을 갖는 公共圖書館의 奉仕選擇을 입고 있으나 50,000,000名은 그 以下의 收入을 갖는 圖書館의 奉仕밖에 받지 못할 뿐아니라 나머지 35,000,000名은 全혀 圖書館奉仕를 外面當하고 있는 現象을 認識하였다가 때문이다.<sup>(13)</sup> Jean Gates는 이를 35,000,000名의 90%가 農村人口라고 하고 있다.<sup>(14)</sup> 圖書館奉仕가 없는 이러한 地域에 그 活動을 擴大시키기 爲하여 1948年 Public Library Demonstration Bill이 議會에 提案되었으나 3票만 徹少한 差로 否決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法案은 비록 失敗는 하였으나 當時 公共圖書館 行政當局에 對하여 모든 住民을 爲한 圖書館奉仕의 責任을 痛感케 하고 또한 住民의 欲求가 무엇인가 研究하고 州全體로서의 圖書館奉仕計劃을 立案推進하도록 刺戟하였다는點에 意義가 있다고 볼수 있다. 한便 戰後 10년이 經過한 1956年 美聯邦教育局의 統計에 依하면 50,000,000人口는 如前히 圖書館奉仕가 不適할 뿐 아니라 아직도 26,000,000以上의 農村人口는 圖書館奉仕의 異邦地帶에 放置되고 있었고<sup>(15)</sup> 全體郡(County)의 10%를 上超하는 29個州 319 County는 公共圖書館이 欲하였다.<sup>(16)</sup> 大戰이 끝나고 1956年까지 10年間을 戰爭의 마무리와 價値體系의 再定立에 所要한 美國은 이제 모든 圖書館資料를 國家資源化함으로서 모든 市民의 最大接近을 期하고 이로써 時代의 要請인 識見을 갖춘 有權層의 擴大에 國家의 努力を 領注하게 된 것이다.

### III. LSA와 LSCA의 内容

#### 1. 圖書館奉仕法(Library Services Act)

近代美國圖書館立法의 아버지<sup>(17)</sup>라고 하는 LSA는 1944年 워싱톤에서 開催된 圖書館人의 會合에서 胎動되어 1946年 처음으로 上院에 提案된지 10년

(13) Nelson, 前揭書, p.14.

(14) Gates, 前揭書, p.176.

(15) James W. Fry, "LSA and LSCA, 1956-1973: A Legislative History," *Library Trends*, Vol.24, No.1 (July, 1975), p.9.

(16) Gates, 前揭書, p.176.

(17) Low, 前揭書, p.722.

이 지난 1956年 6月 19日 Eisenhower 大統領이 署名함으로서 드디어 그 빛을 보게 되었다. 지금 그 내용을 簡單히 볼것 같으면 人口 萬名以下の 農村을 對象으로 年間 7,500,000弗의 財政支援을 하되 이 資金을 建物의 建立과 土地買入 以外의 모든 圖書館運營費로 使用할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各州에서는 1人當所得에 따른 一定의 自己資金을 充當하여야만 비로소 中央의 補助金을 使用할수가 있었다.<sup>(18)</sup> 當初 1961年 6月 30日까지 効力を 가진 LSA는 5年동안에 500萬卷 以上的 圖書와 200個 以上的 새로운 自動車文庫 및 40% 以上的 貸出量의 增大를 結果하였지만 아직도 1960年 4月 現在 全體 人口 179,323,175名<sup>(19)</sup> 가운데 約 40,000,000의 人口는 圖書館奉仕가 없거나 不充分한 狀態에 놓여 있었다.<sup>(20)</sup> 그리하여 1960年 8月 31日 LSA는 다시 改正되어 1966年 6月 30日까지 5年間 事業을 延長하게 되었다. LSA의 事業 初年인 1957年부터 LSCA가 制定되어 1964年까지의 實績을 보면 새로이 圖書館奉仕의 恩澤을 받게된 人口가 2,400,000名에 이르고 있고 38,300,000名에게 圖書館奉仕를 向上시켰으며 377個의 自動車文庫를 購入, 總 160,600,000 弗의 農村圖書館奉仕를 為하여 使用되었다.<sup>(21)</sup>

## 2. 圖書館奉仕 및 建築法(Library Services and Construction Act)

美國圖書館歷史上 가장 強力한 圖書館立法인 LSCA는 1963年 1月 29日 Kennedy大統領이 議會에 特別教育및세자를 보내는 가운데 提議하였던것으로 Kennedy大統領은 上院에서 이法案이 通過되기 4日前 同年 11月 22日에 凶彈에 쓰러지고 同法案은 1964年 2月 11日 Johnson大統領의 裁可를 얻어 發効하였다. LSA事業이 類例없는 成果를 가지고 왔음에도 美國內에는 아직도 18,000,000의 人口가 圖書館奉仕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뿐아니라 카네기 財團의 後援<sup>(22)</sup>이 끊어진지 40年동안 圖書館建物의 代替率은 10年에 2%라는 微微社 狀態에 머물고 있어 地域社會에서 가장 오래된 政府의 建物은 圖書

(18) *The Bowker Annual of Library & Book Trade Information* (New York: Bowker, 1964), p. 118.

(19) United Nations, *Demographic Yearbook* 1962, p. 308. 當時 農村의 人口는 全體人口의 30.1% 即 54,054,425名이었다.

(20) Fry, 前揭書, pp. 11—13.

(21) Paxton P. Price and Herbert A. Carl, "Washington Report: From the Library Services Branch," *ALA Bulletin*, Vol. 59 (Sep., 1965), p. 699.

(22) 카네기財團은 1881년에서 1917年사이 총 4천 1백만불을 投入, 1,681個의 公共圖書館을 建築하였을 뿐아니라 1917年을 고비로 하여 1961年까지는 建物建築에서 圖書館奉仕와 教育에 後援의 重點을 둘았다. (Fry, 前揭書, p. 7)

館이었다.<sup>(23)</sup> 그래서 LSCA에서는 聯邦資金을 圖書館建物의 新政策에도 使用할 수 있도록 하는一方對象地域도 人口萬名以下라는 基準을 撤廢함으로서 都市地域까지 擴大되었고 運營資金 또한 同法律의 効力이 끝나는 1966年 6月 30일까지 3年間 每年 2천 5백만불을 計上하게 되었다.豫算上僅少하나마 圖書館協力團組織과 身體障礙者를 爲한 圖書館奉仕에 聯邦政府가 謙心을 기울이기始作한 것도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LSCA는 目標年慶인 1966年까지 375個以上의 自動車文庫와 천4백만권의 藏書追加 및 333個의 建物의 新政策을 가지고 올으로서 2천 3백 30만평이 새로이 圖書館奉仕의 惠擇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천2백만의 国民이 圖書館奉仕를 받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38%에 該當하는 圖書館建物이 老朽하여<sup>(24)</sup> 1966年 7月 LSCA는 다시 5年間 延長實施하게 되었다. 特記할것은 修正法律에는 從前의 LSCA事業 即 圖書館奉仕와 建築以外에 두개의 새로운事業이 包含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第3章의 圖書館間協力<sup>(25)</sup>과 第4章의 特殊圖書館奉仕計劃에 對한 支援이다. 特殊圖書館奉仕計劃이 한 州에 依하여 支援 또는 運營되어지는 機關의 사람들에게 對한 奉仕와 身體的條件때문에 印刷資料를 使用 또는 읽지 못하는者를 爲한 奉仕를 包含하고 있다.

LSCA는 1970年代에 들어와서도 數次의 修正을 거치면서 繼續 그事業을 延長하여 왔다. 1970年 12月에는 第2次 LSCA 延長案이 Nixon大統領에 依하여 署名됨으로서 76年 6月 30일까지 5年間 그 効力を 延長하였고 議會는 이를 爲하여 11억 4천만불의豫算을 承認하였다. 새로운 LSCA는 從前의 第4章을 第1章에 統合시켰는데 그 骨子를 보면 約 600萬에 이르는 身體障礙者에 對한 奉仕強化와 約 4천만에<sup>(26)</sup> 이르는 文盲者와 少數人種을 包含한 不利한 集團(Disadvantaged Group)에 對한 奉仕強化를 비롯하여 州의 圖書館 行政當局의 機能強化 및 國家的 地域的 資料를 터로시 奉仕하는 大都市의 圖書館機能強化等이다. 1973年 5月엔 새로이 第4章을 追加하여 從前에는 第1章에서 遂行하여 오던 老年層에 對한 圖書館奉仕(Older Readers Services)를 規定하고 1974年 8月에 이르러서는 限定位 莫語能力을 가진 사람들을 살

(23) Fry, 前揭書, p. 14.

(24) 上揭書, p. 18.

(25) 圖書館間協力에 關한 聯邦政府의 또 하나의 政策은 議會圖書館을 通過하여 具現되고 있다. 即 1965年の 高等教育法(Higher Education Act) 第2章 3節에 依하여 議會圖書館은 5年間 國家收書 및 目錄計劃(National Program for Acquisitions and Cataloging 또는 Shared Cataloging Program)을 實施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26) NCLIS, 前揭書, p. 39.

고 있는 地域에 對한 圖書館奉仕를 強化하기 為한 規定이 插入되었다.<sup>(27)</sup> LSCA는 다시 1976年 2月에 第3次至 5個年間 延長案이 可決됨에 따라 繼續聯邦政府의 支援을 받게 되었는데 同延長案의 骨子는 다음과 같다.<sup>(28)</sup> 먼저 第 1, 2, 4章에 對하여는 1976年度線의豫算을 繼續維持하되 第3章에 對해선 同年度의 18,200,000불에서 50,000,000불로 增額할것을 要求하고 있다. 그리고 炙한 各州에 對하여는 그들이 받을수있는 支援額數를 1年前에 알아서 賢明하여 事業을 遂行할수 있도록 制度를 바꾸는가하면 州 自體의 行政과 間接經費에 第1章의 資金使用限度額을 10%로 限定하였다.<sup>(29)</sup> 그것은 欲心 많은 州에 따라서는 联邦政府資金으로써 州自體의 財政에 補充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Vermont의 例를 들어보면 會計年度 72/74까지의 联邦資金 529,000불중 地方에 支給된 것은 85,500불에 不過하였다.<sup>(30)</sup>

### III. 兩法의 成果 및 그 性格

#### 1. 成 果

圖書館發展事業가운데 가장 持續的이었던 LSA와 LSCA事業은 1957年以來 1974年까지 4천 5백만권의 藏書와 650臺의 自動車文庫를 비롯하여 1,500個圖書館建物의 新築 또는 改築을 為하여 總6억 2천 6백만불의 資金을 支出하였다.<sup>(31)</sup> 이 金額은 5불가지의 圖書를 1억 2천 5백 20만권 購入할 수 있는 巨額으로서 74年 現在 美國의 公共圖書館 7,667個館<sup>(32)</sup>의 書架上에各 16,000

(27) Joseph F. Shubert, "The Impact of the Federal Services and Construction Act," *Library Trends*, Vol. 24, No. 1 (July, 1975), p. 32.

(28) *American Libraries*, Vol. 7, No. 2(Feb., 1976), p. 76.

(29) 1975年 9月 25일 Los Angeles에서 開催된 NCLIS 會議에서의 議論, 大統領 그리고 联邦教育局에 對한 建議가운데 이 10%線을 提示한바 있었다. (*The Bowker Annual of Library and Book Trade Information* 1976, p. 16).

(30) Ibid. 前揭書, p. 144.

各州에는 圖書館行政에 對한 諮問委員會가 있었지만 아니라거나 그 機能이 諮問에 그칠뿐 아니면 資料人選出體가 州의 圖書館行政當局에 依하였기 때문에 是實効를 거두지는 못한것 같다. 그에 반해 1972年度 LSCA修正時 同諮詢委員의 3분의 1은 반드시 利用者の 利益을 代表하는 사용자(User Interests)를 構成한 것을 規定까지 하였던 것이다. (上揭書, p. 146).

(31) Ibid. 前揭書, p. 19.

(32) 이 統計는 Bowker의 *American Library Directory* 1974~75에 依한 것으로 藏書 10,000권以上의 圖書館만을 集計한 것인데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urvey에서는 公共圖書館이 8,382個로 나타나고 있다. 이 差異는 圖書館分館과 圖書館시스템의 數를 計算함에 있어서 方法上의 差異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Bowker의 郵便發送名單에는 上記圖書館以外에 年間 2,000을 超える 收入 또는 500ドル 미만의 圖書費밖에 없는 圖書館이 約 2,000個 더 있었다. (*Bowker Annual of Library and Book Trade Information* 1976, p. 227).

&lt;表 1&gt; LSCA年度別 歲出額

단위: 백만불

| Fiscal Year | Title I | Title III | Title IV-A | Title IV-B | Total Services | Title II |
|-------------|---------|-----------|------------|------------|----------------|----------|
| 1957        | 2.0     |           |            |            | 2.0            |          |
| 1958        | 5.0     |           |            |            | 5.0            |          |
| 1959        | 6.0     |           |            |            | 6.0            |          |
| 1960        | 7.4     |           |            |            | 7.4            |          |
| 1961        | 7.5     |           |            |            | 7.5            |          |
| 1962        | 7.5     |           |            |            | 7.5            |          |
| 1963        | 7.5     |           |            |            | 7.5            |          |
| 1964        | 7.5     |           |            |            | 7.5            |          |
| 1965        | 25.0    |           |            |            | 25.0           | 30.0     |
| 1966        | 25.0    |           |            |            | 25.0           | 30.0     |
| 1967        | 35.0    | .4        | .4         | .3         | 36.1           | 40.0     |
| 1968        | 35.0    | 2.3       | 2.0        | 1.3        | 40.6           | 18.2     |
| 1969        | 35.0    | 2.3       | 2.1        | 1.3        | 40.7           | 9.2      |
| 1970        | 29.8    | 2.3       | 2.1        | 1.3        | 35.5           | 7.8      |
| 1971        | 35.0    | 2.3       | 2.1        | 1.3        | 40.7           | 7.1      |
| 1972        | 46.6    | 2.6       |            |            | 49.2           | 9.5      |
| 1973        | 62.0    | 7.5       |            |            | 69.5           | 15.0     |
| 1974        | 44.2    | 2.6       |            |            | 46.8           | 0        |
| Total       | 423.0   | 22.3      | 8.7        | 5.5        | 459.5          | 166.8    |

Source: *Library Trends*, Vol. 24, no. 1(July, 1975), p. 43.

※ Title I: Library Services

Title II: Library Construction

Title III: Library Cooperation

Title IV-A: State Institutional Library Services

Title V-B: Library Services to the Physically Handicapped

권 이상의 藏書를 增加시키거나 全體人口<sup>(33)</sup> 1人當 約 0.6卷의 藏書增加를 가지고 올수 있는 額數에 該當하는 것이다. 1974年度까지의 年度別 歲出金額을 보면 表(1)과 같다.

上記表에서 뚜렷한 것은 總歲出額의 95%가 第1章 및 第2章에 投入되었으

(33) United Nations, *Demographic Yearbook* 1973에 依하면 1970年現在 美國人口는 203,211,926名이다.

며 第3章과 第4章에의 歲出은 적지만 큰 斷層없이 繼續되어 왔다는 事實과豫算削減時에는 1次的으로 第2章이 對象이 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러나 資金使用面에 있어서 第1章은 非効率的으로 쓰일수 있는 可能성이 가장 큰 部門인데 反하여 LSCA資金中 가장 効果的이고 滿足스런 結果를 가지고 온 部門은 第2章이었다.<sup>(34)</sup>

LSA와 LSCA가 가지고온 結果에 對하여는 앞에서도 指摘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數10年동안 無視된채 無氣力한 存在에 不過했던 州圖書館當局이 1957年부터 巨額의 資金이 流入되기 始作하면서 強力하고도 活力이 넘치는 要因이 되었다는 것이다. LSA가 通過되던 해만 하여도 各州에는 圖書館의 對外奉仕活動을 爲한 機構를 모두 갖추고 있지는 못하였다. 어떤 州에는 機構만 있고豫算이 全然 없는가 하면 또 어떤 州에는 아예 機構조차 없기도 하였다. 따라서 LSA初年度에는 法이 要求하는 條件을 充足하지 못하여 資金을 支援받지 못한 州도 있었으나 1960年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州가 LSA事業에 參加할수 있는 計劃을 開發하게 되었다.<sup>(35)</sup> 特히 第3章은 州에게 새로운 責任을 附與 各級圖書館의 障壁을 打破하고 이를과 서로운 關係를 形成, 圖書館種間協力(Inter-type Library Cooperation)을 圖謀하게 하였고 나아가서 圖書館奉仕의 計劃과 發展에 도움을 줄수있는 더욱 効果的인 方案을 講究하도록 만들었다. 其外 公共圖書館奉仕擴大를 爲하여 州 또는地方에서는 立法過程을 通하여 聯邦政府資金과는 別途의 追加資金支援,<sup>(36)</sup> 圖書館시스템 또는 地區圖書館(Regional Library)의 設立承認, 公共圖書館司書의 補充手段으로서의 奨學金支給,<sup>(37)</sup> 圖書館建物의 建築支援, 公共圖書館職員에 對한 새로운 人事政策等<sup>(38)</sup> 多樣한 形態로 圖書館奉仕의 發展策을 圖謀하게 되었다. 1948年以後 1971年까지의 全體經濟成長率이 242%인데 比하여 1948—49年に 實施된 Robert D. Leigh博士의 調查對象圖書館의 같은期間에 결친 收入의 中間值는 500%나 增額되었고 藏書의 規模가 90%나 增加된 現象은 모두 偶然한 結果가 아니다. LSA와 LSCA是 起爆劑로 한 聯邦

(34) 11年동안 第2章에 依한 事業은 모두 2,036件에 達하여 投資額은 174,500,000\$이 이르고 있다. (*Bowker Annual of Library and Book Trade Information* 1976, p. 153)

(35) Gates, 前揭書, p. 187.

(36) 1962—72年間 州에서 圖書館奉仕에 對하여 支援하고 있는 數는 21個州에서 33個州로 늘어나고 있다. (*Bowker Annual of Library and Book Trade Information* 1975, p. 58)

(37) LSA와 LSCA가 制定實施된 以來 10年동안에 500 以上의 大學院 圖書館學分野 奨學金이 州에 依하여 支給되었다. (Gates, 前揭書, p. 122).

(38) Allex Ladenson, "Twenty Years of Library Legislation," *ALA Bulletin*, Vol. 59, No. 2 (Feb., 1965), pp. 125—31을 引用한 Gates, 上揭書, p. 189에서 再引用.

政府와 州 및 地方政府의 圖書館發展策의 所產이라고 하겠다.<sup>(39)</sup>

## 2. 性 格

앞에서 우리는 兩法이 制定되기까지의 歷史的背景을 考察한바 있지만 이  
체 同法이 가지고 있는 特性을 간추려본다면 다음의 몇가지로 整理할 수 있  
다고 생각되어 진다. 即 同法은 처음부터 州 및 地方의 圖書館行政에 關한  
創意와 積極性을 불러 일으키려는 政策이었다는 點, 그렇기 때문에 時限立  
法이라는 點, 그리고 圖書館利用에 不利한 條件아래 있는 者를 爲한 圖書館  
奉仕擴大政策이었다는 點, 또한 同法은 與野의 區別없이 全國家的인 努力의  
結晶으로 이루어진 政策이라는 點 等이다.

첫째로, 兩法은 地方自治의 政治哲學이 가장 確立된 美國의 政治風土에서  
生成된 法律이기 때문에 州 및 地方政府의 自治權을 最大로 尊重하면서 圖  
書館奉仕活動을 極大化시키려는 政策이었다. 이點은 LSA規定에도 明白히  
하고 있는바 “公共圖書館의 奉仕에 있어 地方政府의 創意와 責任을 干涉하  
는 것으로 解釋하여서는 안된다”라고 規定한 것이라든지 “公共圖書館의 運  
營과 職員 및 圖書의 選定은 州와 地方政府에 依하여 이루어져야 한다”<sup>(40)</sup>라  
고 規定한 것은 모두 聯邦政府의 責任의 限界를 明示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  
다. 그것은 決코 官權的, 指示的, 團束의인 것이거나 情報흐름의 內容에 對  
하여 干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地域的, 特殊의인 圖書館奉仕를 支  
援하고 全國의in 圖書館奉仕의 體系와 計劃的成長을 爲하여 調整하고 努力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精神은 美國의 獨特한 政治風土의 產  
物이긴 하나 한便으로는 市民의 圖書館資料利用은 適時에 適所에서 適切한  
形態의 資料라이 効果의이기 때문에 豐富한 地方的 資料와 奉仕를 基盤으로  
하고 聯邦은 2次的, 支援的, 補助的, 指導的 機能을 遂行하지 않을 수 없다  
는데서 緣由된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따라서 同法은 처음부터 時限의in 性格을 가지고 出發하였을 뿐 아니라 州  
또는 地方政府도 一定의 自己資金負擔을前提로 聯邦資金을 使用할 수 있게  
하였다.<sup>(41)</sup> 이것은 1956年 6月 19日 Eisenhower大統領이 LSA에 署名하면

(39) Robert D. Leigh博士는 카네기財團의 後援아래 1948—49年間 22個州 60個圖書館에 對하여 實  
施된 調査報告書(*The Public Library in the United States: The General Report of the Public  
Library Inquiry*)에서 調査當時로부터 向後 10年동안에 公共圖書館은 50%의 財政增加를 이룩  
하여야 한다고 呼訴하고 있다.(Allie Beth Martin, *A Strategy for Public Library: Proposed  
Public Library Goals-Feasible Study* (Chicago:ALA, 1972), p. 11—16)

(40) Fry, 前揭書, pp. 11—12.

(41) 各州의 1人當所得에 따라 最下 34%에서 最高 67%까지 州 또는 地方政府에서 事業資金을

서 “이 制限된 聯邦事業이 끝날때는 各州에 依하여 이 事業이 繼續될 것을 確信한다.”<sup>(42)</sup>라고 闡明한데서도 엿볼수 있다. 때문에 長期의in 支援約束 또는 義務負擔을 가져오는 決定은 잘 하지 않는 美國議會에서, 援助가 끝나면 自立할수 있다는 保障을 할수있는 事業을着手할 수 있도록 도움는데 同意하였다 것이다. 그러나 教育 또는 圖書館事業을 단번에 끝나거나 成果를 樈揚할 수 있는 事業이 아니기 때문에 LSCA는 몇차례의 延長을 거듭하여 왔고 앞으로도 繼續될 展望에 있는 것이다.

둘째로, 同法은 圖書館資料를 國家資源化하여 모든 市民에게 特히 圖書館利用에 不利한 處地에 놓여 있는者에게 圖書館奉仕를 擴大하기 爲한 政策에始終一貫 重點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LSA가 人口 萬名 以下의 農村을 對象으로 始作하여 1957年부터 1963年까지 實施되었고 LSCA에 이르러서는 身體的條件때문에 印刷資料를 읽지 못하거나 使用못하는 身體障礙者와 文盲者, 小數人種을 包含한 圖書館利用不利集團에 對한 支援과 生活水準과壽命의 延長으로 해마다 增加되는 老年層 人口와 限定한 英語ability 때문에 充分한 圖書館資料를 利用못하는 사람들에 對한 圖書館奉仕의 強化等을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20世紀 福祉社會의 實現과 함께 보다 幸福된 國民生活의 賽爲에 必要한 社會政策의 配慮임과 同時に 複雜하고 어려운 現代社會의 問題解決과 經濟的 成長 및 國力의 伸張에 必須의in 有識한 國民의 確保는 市民의 大學이나 平生教育機關인 公共圖書館의 擴大에 있다는 것을 自覺한 政府의 當然한 結果라고 하겠다.

셋째로, 兩法은 政治的意見이나 經濟的 利害關係와 與野를 超越한 舉國的in 運動에 依한立法이었다.<sup>(43)</sup> 1956年 議會에서 兩黨議員이 共同으로 同法案을 提案하자 ALA를 비롯하여 19個의 全國的in 團體가 이를 支持하고 나설뿐 아니라 New York Times紙는 同年 5月 5日字에서 同法案의 通過를 強力히 呼訴하고 나섰던 것이다.<sup>(44)</sup> 그리고 上·下 兩院에서의 審議過程에서 보여준 與野議員의 絶對的支持는 兩法律에 對한 國家的要請이 얼마나 큰

充當하고 있다.(Igoc, 前揭書, p.138)

(42) Fry, 前揭書, p.10.

(43) Indiana 州의 Harold Handley知事は LSA事業에 對하여 위성頓의 行政官僚들이 精選한 圖書에 依해서 市민이 洗腦된다는 理由로 그 地域에 圖書館奉仕의 惠澤을 모른 人口가 80萬이 나 있음에도 不拘하고 受援을 頑強하게 拒否, 1961年까지 LSA資金을 받지 않는 唯一한 州가 되었었다. 그러나 反對로 John Brademas 州出身議員들은 州知事を 너무 近視眼의이라 猛駁하면서 積極的으로 議會內에서 LSA의 立法運動에 앞장섰던 것이다.(Fry, 前揭書, p.12)

(44) Fry, 前揭書, p.10.

&lt;表 2&gt; LSA 및 LSCA 議會票決 狀況

| 年 度  | 上 程 法 案                          | 議 院           | 投票結果<br>(贊反)        | 備 考    |
|------|----------------------------------|---------------|---------------------|--------|
| 1960 | LSA 延長案                          | 上 院           | 滿場一致                | 通 過    |
| 1964 | LSCA                             | 上 院<br>下 院    | 89 : 7<br>254 : 107 | 〃<br>〃 |
| 1965 | LSCA 延長案                         | 下 院<br>兩院合同會議 | 336 : 2<br>滿場一致     | 〃<br>〃 |
| 1970 | ” 2次延長案                          | 兩 院           | 滿場一致                | ”      |
| 1973 | Zero Funding <sup>(45)</sup>     | 下 院           | 347 : 53            | 廢 弃    |
| 1976 | 76會計年度 LSCA豫算再審 <sup>(46)</sup>  | 上 院<br>下 院    | 379 : 41<br>88 : 12 | 確 定    |
| ”    | LSCA 3次延長案                       | 下 院           | 378 : 7             | 通 過    |
| ”    | 76會計年度 LSCA 追更豫算 <sup>(47)</sup> | 下 院           | 352 : 35            | ”      |

Source: *Bowker Annual of Library and Book Trade Information* 1976.  
*American Libraries*, Vol. 7, nos. 1-11.  
*Library Trends*, Vol. 24, No. 1(July, 1975)

것인가를 나타내어주는 尺度가 될 것이다. LSA와 LSCA에 關한 主要票決結果를 보면 表(2)와 같다.

마지막으로 LSA와 LSCA는 議會의 多數黨인 民主黨에 依하여 支持되고 推進되어온 樣相을 엿볼수 있다. 다시 말하면 民主黨立法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것 같다. 1946年 LSA를 提案하고 또 이의 延長案과 LSCA 延長案을 直接 提案하였던 Alabama 州出身 Lister Hill 上院議員<sup>(48)</sup>을 비롯하여 같은 州出身의 Carl Eliot<sup>(49)</sup>, Pennsylvania의 John H. Dent,<sup>(50)</sup> Illinois의 Roman

(45) 1970年代에 들어와서 議會와 大統領은 國家目標와豫算執行의 優先順位에 對하여 意見對立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朝鮮戰爭, 熱病같은 因素에 基因된 것으로 볼수 있다. LSCA에 對하여 Nixon大統領은 1973年 1月 圖書館은 必須의으로 州 및 地方政府의 責任이라고 主張, 1974會計年度부터 LSCA資金支出의 終結을 提案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71會計年要分資金을 71年 4月까지 支出을 遲延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議會의 反對와 法院의 判決에 따라 LSCA事業은 繼續되었던 것이다.

(46) 76會計年度分 LSCA와 高等教育法第2章(HEA Title II)에 대한豫算是 教育資金支出法案(Education Appropriations Bill)에 包含시켜 議會에서 行政府에 移送하였으나 Ford大統領은 拒否權을行使 이를 議會에 返回시켰다.

(47) 1977會計年度부터 지금까지의 7月~6月 會計期間을 10月~9月 會計期間으로 燃更替에 따라 76年 7~9月까지의 過渡期間동안 使用된 LSCA豫算이다.

(48) 그는 學問을 大端히 好아하고 德望이 있을뿐 아니라 議會內에서도 上院 労動 및 厚生分科委員長으로서 圖書館發展에 가장 功이 큰 議員이기 때문에 1968年 ALA에서 Certificate of Commendation을 授與받았다.

(49) 유패동안 下院教育分科委員長으로 1960年 LSA 延長案의 通過에 主役을擔當,當時 Kennedy上院議員으로부터 感謝狀까지 받은바 있는 사람이다. 議員職을 그만 두고도 大統領의 圖書館諮詢委員(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Libraries)으로서 積極的으로 活躍하였다.

(50) 下院教育分科委員長을 歷任한 바 있으나 LSCA를 下院에서 起草하였다.

(51) LSCA 延長案을 下院에 提案하였다.

Pucinski,<sup>(51)</sup> Rhode Island의 Claiborne Pell,<sup>(52)</sup> Texas의 Ralph Yarborough,<sup>(53)</sup> Indiana의 John Brademas,<sup>(54)</sup> Kentucky의 Carl D. Perkins,<sup>(55)</sup> 亦是 Indiana의 Birch Bayh,<sup>(56)</sup> Maine의 Edmund Muskie,<sup>(57)</sup> California의 Harold T. Johnson議員<sup>(58)</sup> 等은 모두 民主黨出身이 있고 LSA延長案의 反對運動의 앞장섰던 Ohio의 Frank T. Bow 下院議員을 為始하여 같은州의 John M. Ashbrook,<sup>(59)</sup> Texas의 John G. Tower,<sup>(60)</sup> New Jersey의 Peter Frelinghuysen議員<sup>(61)</sup> 等은 共和黨出身이었다. 이와한 現象은 民主黨의 廣闊한 農村地域을 政治的基盤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農村地域住民에게 圖書館奉仕를 擴大시킬수 있는 LSA에 對한 積極的인 支持는 어쩌면 當然한 것으로 보아도 無理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 V. 兩法制定에 있어서의 ALA活動

어느나라를 莫論하고 立法化過程에 있어서는 議會와 行政府, 그리고 選舉權者의 3要素와 力動的 關係를 가지고 推進되어야 쉽게 目的을 達成할 수가 있다. LSA는 1946年 처음으로 上院에 提案된지 實로 20년에 걸친 ALA의 倫질기고 持續的인 政治的活動의 結果이자 繼續的인 調査研究<sup>(62)</sup>와 公共敎育의 所產이었다.<sup>(63)</sup> 政治的活動의 主要內容은 美國全體의 3分之 1의 人口가 不適當한 圖書館奉仕를 받고 있는 實情을 議會와 行政府에 認識시키고 說得시켜 聯邦政府의 積極的인 關心과 支援을 力說하는 것이었다. 政治的活動의

(52) LSCA 2次延長案을 起草한 上院議員이다.

(53) Pell議員을 도와 上院에서 LSCA 2次延長案이 通過되도록 積極支援하였다.

(54) LSCA 2次延長案을 下院에 提案하였을 뿐 아니라 1975年 12月에는 下院特別敎育委員會議長으로서 LSCA 3次延長案을 提案하였다.

(55) Brademas議員은 積極支援 LSCA 2次延長案의 下院 通過에 큰 役割을 하였다.

(56) Nixon 大統領의 Zero Funding案을 가장 나쁜 종류의 거짓 經濟(False Economy)라고 酷評하고 나온 上院議員이다.

(57) Bayh議員과 더불어 1973年度 LSCA終結案을 痛駁하고나선 上院議員이다.

(58) LSCA 3次延長案을 下院에서 提案한 議員이다.

(59) LSCA가 下院에서 上程되자 圖書館體系의 聯邦化를 憂慮, 이에 反對主張을 한 下院議員이다.

(60) LSCA를 上院에서 積極反對한 議員이다.

(61) LSCA의 對象과 規模를 縮少하여 修正案을 提案한 下院議員이다. 이案은 結局 179 : 183으로 舛決되고 當初의 LSCA案이 通過되었다.

(62) 그동안 主要한 調査研究結果의 出版物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Postwar Standards for Public Libraries (1945).

A National Plan for Public Library Service (1948).

The Public Library Inquiry (1949—50).

The Report of the U.S. Dept. of Agricultural Conference on Rural Reading (1951).

Public Library Service, a Guide to Evaluation, with Minimum Standards(1956).

(63) Schubert, 前揭書, p.29.

中心的인 實踐機關은 ALA機構下에 있는 法制委員會(ALA Legislation Committee)와 워싱턴事務所(ALA Washington Office)이다. 이들의 存在意義와 役割에 關하여는 Rhode Island州 出身 下院議員인 John E. Fogarty의 말을 빌어서 充分할것 같다.

“圖書館은 美國의 政治過程과 떨어져서 存在할 수는 없다. 따라서 圖書館의 將來는 立法活動과 直結되는 것으로서 統一된 後援을 할수있는 圖書館法이 없이는 그 成功은 微弱할 것이다. 立法府의 支持와 理解를 얻기 為하여는 法案本體가 用意周到하게 起草되어지고 또 豊富한 創意力과 知性, 그리고 热誠을 가지고 提案되어져야 한다.”<sup>(64)</sup>

특히 ALA Washington Office는 設置以後 30餘年間 初代 Paul Howard所長을 비롯한 歷代所長들의 情熱的인 活動으로 圖書館에 對한 여러가지 聯邦資金의 支出法案의 通過에 絶對的인 役割을 遂行하였다. 現在 所長인 Germaine Krettek女史는 前任 Julia Bennett女史와 같이 美貌가 뛰어날뿐 아니라 能熟한 유모아와 넘치는 热情으로 議會의 로비 活動名手로서 議員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sup>(65)</sup> 이들의 犟牲의in 努力의 結晶이 1956年에는 3個의 圖書館關係基本法<sup>(66)</sup>에 依한 聯邦資金이 2백만불에 不過 하던것을 20年동안에 總計 18억불이란 巨額의 資金을 圖書館事業에 投入해 만들었다고 생각된다.<sup>(67)</sup>

ALA는 또한 對議會活動에 있어서 全國圖書館을 圖書館立法이라는 하나의 求心點을 向하여 集約하고 이를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56年 LSA가 처음으로 下院을 通過하자 ALA는 全國會員에게 法案通過에 中心役割을 한 主要議員들에 對하여 感謝狀을 送付할것을 勸하는가 하면 75年度부터는 全國圖書館週間(National Library Week)동안에 워싱턴立法府의 날(Washington Legislative Day)을 定하여 全國에 걸친 圖書館人の 代表들이 議事堂에 모여 聯邦政府의 圖書館에 對한 繼續的인 支援을 說得하고 議員들의 確信을 얻어내는 캠페인을 展開하도록 하고 있다. 75年度 第1回行使의 成果로 議會에서 자그마치 15,000,000불이나 支援을 얻게되자 ALA

(64) 上揭書, p.41.

(65) Low, 前揭書, p.724.

(66) LSCA와 Higher Education Act, Title II 및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itle II를 말한다.

(67) Eileen D. Cooke, "The Role of ALA and Other Library Associations in the Promotion of Library Legislation," *Library Trends*, Vol. 24, No. 1(July, 1975), p.139.

立法委員會에서는 이行使를 圖書館週間의 恒久的인行使로 할것과 各州의 首都와 重要都市에서도 市長과 議員을 찾는날을 設定, 公的支援을 얻는데 努力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sup>(68)</sup> 第2回는 76年 4月 6日 全國 29個州에서 157名이 Washington Office에 參席, 議員들을招待하였는데<sup>(69)</sup> 이러한 行使는 지금까지의 對議員活動樣相을 크게 發展시켜 나아갈 것으로 期待되어진다.

글으로 ALA는 各州 및 地方에도 有能한 會員을 많이 確保하고 있어서 이들에 依한 對議員活動을 活潑히 展開하는 一方 議會內 關係分科委員長을 비롯한 指導層議員을 主로 包攝하여 그들로 하여금 法案의 提案, 贊成, 通過에 主役을 맡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LSA와 LSCA에 關한限不朽의 名聲을 남기게 될 Lister Hill 上院議員의 例를 들면 그의 遷舉區에는 政治의 으로 手腕이 뛰어난 圖書館人이 있었으며 그럼으로서 그는 勞動 및 厚生分科委員長으로서前述한 바와 같이 數次에 걸쳐 直接 法案을 提案하게까지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Hill議員以外에도 上·下兩員에 걸쳐 Edith Green 女史, Carl Eliot, Wayne Morse, John H. Dent, John Brademas 議員等은 圖書館關係立法을 直接 管掌하는 教育分科委員長을 歷任한 사람들로서 이들이 LSA와 LSCA通過를 爲하여 率先的으로 行動하게 한 ALA의 功勞는 아우디 높이 評價하여도 不足하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 II. 結 言

20世紀에 들어와서 急激히 膨脹하는 情報資料의 圓滑한 流通과 普及은 現代國家가 안고 있는 重要課題의 하나로서 各國은 모든 情報資料를 國家資源化하여 市民의 自由롭고 均等한 最大的 接近을 通한 國力의 培養에 國家の 努力を 傾注하여 왔다. 美國은 二次世界大戰後 世界를 領導하는 指導的位置에서서 戰後의 많은 難題를 解決하여야 할 立場에 있으면서도 안으로는 3천 5백만의 國民이 圖書館奉仕를 모르고 살아야 했고 不適當한 奉仕를 받고 있는 人口가 5천만명이나 되어<sup>(70)</sup> 이들에 對한 圖書館奉仕의 擴大는 美國의 國家의 課業이었다. 20年에 걸친 ALA의 累積기고 출기찬 活動에 1956

(68) *American Libraries*, Vol. 7, No. 1(Jan., 1976) p. 56.

(69) 上揭書, No. 6(July, 1976), p. 294.

(70) Nelson, 前揭書, p. 14.

年 制定된 LSA는 人口 萬名 以下의 農村에 對한 이러한 圖書館奉仕의 擴大와 州 및 地方政府의 圖書館行政에 對한 創意性과 積極性을 喚起시킬 目的으로 着手된 時限性을 가진 聯邦補助金支出法律이었다. 그러나一般的으로 教育및 圖書館事業은 短期의in 投資로 所期의 目標를 達成할수 있는 事業이 아니기때문에 1964年에 이르러서는 보다 豫算과 規模를 擴大한 LSCA로 發展, 오늘날까지 數次의 延長을 거듭하면서 繼續되고 있다. 兩法에 依한 聯邦政府의 州 및 地方政府에 對한 補助金은 圖書館奉仕의 擴大는勿論, 州 및 地方圖書館當局으로 하여금 보다 積極的이고 能動的으로 圖書館發展을 圖謀하도록 誘導하였다는데 此 意義를 끌어 볼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美國民도 이제는 圖書館에 對한 資金支援政策은 國民教育에 對한 聯邦政府의 責任으로 認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結果에도 不拘하고 地域間 圖書館成長과 情報資料의 不均衡의 是正, 情報奉仕擴大의 繼續的追求, 不充分한 財源의 確保, 特殊圖書館을 包含한 모든 國內情報資料의 自由로운 利用, 管轄區域을 超越한 全國的in 圖書館網組織等<sup>(71)</sup> 美國은 아직도 解決하여야 할 懸案問題가 罣지 않다. 이러한 금진한 問題들을 國家的 次元에서 解決하기 為하여 1966年 Johnson大統領은 國家圖書館諮詢委員會(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Libraries)와 이 委員會의 報告를 土臺로 圖書館政策의 立案을 任務로 하는 Committee on Libraries를 設置하였고 1970年 7月 議會는 行政政府內 恒久的이고 獨立的인 機構로 圖書館 및 情報奉仕에 關한 國家會議(National Conferenc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를<sup>(72)</sup> 設置한 바 있다. 그리고 圖書館發展問題를 圖書館界와 議會의 올타리를 넘어서서 全國民을 參與시켜, 各級 圖書館의 利用改善을 促進하는 勸告案을 만들기 為하여 1978年 以前에 前記 NCLIS가 主管하여 圖書館 및 情報奉仕에 關한 白堊會議(White House Conference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를<sup>(73)</sup> 開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듯 美國의 公共圖書館은 1956年 LSA의

(71) NCLIS,, 前揭書, pp.23-24.

(72) 70年 7月 20日 制定된 公法 91—345에 依하면 第2節에서 “議會는 모든 美國民의 離れ가지欲求를 充足시켜줄 適切한 圖書館奉仕는 國家目的達成과 國家의 教育的資源을 가장 効果的으로 利用하는데 必須의이라고 確信하며 聯邦政府는 滿足스런 圖書館奉仕를 提供하기 為하여 地方政府 및 公私機關과 協力할것을 確信한다”고前提하고 NCLIS의 機能을 第5節에서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委員會는 第2節에서 設定한 政策의 全般的인 計劃을 發展시키고 勸告할根本의in 責任을 가질것이다.” 이 責任을 다하기 為하여 委員會는 議會와 大統領에 助言을 하고 研究와 調査를 實施하며 그 結果를 議會와 大統領에게 報告하고 必要한 出版을 한 수가 있다.

(73) White House Conference는 1909年 Theodore Roosevelt大統領에 依하여 召集된 것이 처음이었다. 構成은 NCLIS에서 3名以上, 上·下兩院에서 각 5名(議員은 각 3名以内)을 推薦하고 大統

通過를契期로 美國書館史上 類例없는 圖書館 및 情報奉仕의 擴大와 情報產業의 發展을 繼續하여 왔으며 앞으로 들어설 民主黨의 Carter 行政府에 있어서는 더욱 發展될 것으로豫想된다.<sup>(74)</sup>

그으로 LSA와 LSCA를 中心으로 美國公共圖書館奉仕活動에 미친聯邦政府의 役割에 關한 考察을 通하여 後進國圖書館奉仕의 擴大를 為한 運動에 바탕적 한 要因을 抽出함으로서 論文의 끝을 맺고자 한다.

1. 國家發展計劃의 一環으로서 長期的인 圖書館發展計劃이 마련되고 繼續의인 研究와 檢討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이를 為하여 大統領直屬下에 圖書館專門人을 包含, 各界指導人士로 構成된 圖書館 및 情報奉仕에 關한 委員會等의 諮問機關이 設置되어 있다.

3. 州 및 地方政府의 創意의이고 積極的인 圖書館事業을 支援하기 為하여 聯邦政府는 20年以上的長期間에 걸쳐 持續的으로 補助金을 支給하여 주고 있다.

4. 聯邦政府는 自主精神을 侵害않고 또 이를 助長하기 為하여 聯邦資金의 使用에는 반드시 一定의 州 및 地方自體資金의 負擔을 條件으로 하고 있다. (Matching Funds System)

5. ALA는 對議會 및 行政府活動을 專擔할수 있는 Legislation Committee와 Washington Office를 갖고 있다.

6. 議會의 指導者, 特히 圖書館立法에 關係있는 人士는 거의 ALA에서 包攝하고 있고 이들의 出身地區에는 有能하고 意欲이 旺盛한 圖書館人이 크게 活躍하고 있다.

7. 메스·杵을 비롯하여 重要한 全國의 團體들은 한결같이 圖書館便이 되어 圖書館事業에 側面支援을 하고 있다.

8. 立法府의 날을 制定 圖書館事業에 關鍵이 되고 있는 議員들과의 對公衆關係를 強化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러한 運動은 Washington 以外의 全國

領이 15名以内에서 任命하는 者로 이루어진다. 議會는 이 會議를 為하여 3백 50만불의 豐算가지 承認하고 있으며 ALA는 White House Conference Planning Committee를 組織하여 이에 對備하는 한便 全國會議以前에 開催되도록 되어 있는 州會議를 為하여 便覽까지 準備하고 있다. (74) Jimmy Carter는 大統領選舉期間中 ALA Washington Office에 보내는 聲明書에서 Ford行政府의 圖書館政策을 近視眼의, 破裂의이라며 猛駁한으로서 全國圖書館人을 鼓舞시킬과 아울리 그의 앞으로의 圖書館發展案에 큰 期待를 걸게 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圖書館立法의 차음부터 民主黨에 依하여 提議되고 推進되어 왔는데다 圖書館立法의 豐年을 이른 1960年代가 거의 民主黨의 Kennedy와 Johnson大統領의 治下에서 이루어진데 反하여 LSCA의 資金終結案이나 聯邦資金의 支出遲延 또는 拒否權行事는 모두 共和黨의 Nixon과 Ford大統領에 依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各地方에서도 推進하도록 力하고 있다.

9. 全國의 圖書館人은 ALA를 核으로 하여 圖書館 發展을 為한 組織的이고 計劃的이며 一體的인 運動을 展開함과 아울러 積極 없는 研究와 調査를 繼續하고 있다.

### 參 考 文 獻

註豆서 代身함

## Role of the United States Federal Government on Public Library Service through LSA and LSCA

Choe, Dal-Hyun\*

### [Abstract]

In modern times, it has been a most important problem for the community to make nation's information resources available to all the people with free and even access. In Nelson Associate's *National plan for library service* appeared in 1948, 50 million Americans were served by public libraries with inadequate service and 35 million have had no library service.

Library Services Act signed by President Eisenhower in 1956 was a result of continuous efforts of ALA for 20 years. It aimed to extend public library service to rural population less than ten thousands. LSA was succeeded by LSCA in 1964 and continued with several amendments so far. 620 million dollars of Federal funds were put into local library administrative agencies during 1957—1974 for the extension of library service and construction of library buildings. Federal funds also encouraged local library administrative agencies to have more interest i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and carry out their own library programs.

However, there are many current problems in American public libraries still now, that is, uneven growth of public libraries, uneven distribu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inadequate library service to a large part of population, insufficient supply of library funds, lack of nationwide library network beyond local admini-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trative jurisdictions and so on.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Libraries, Committee on Libraries, National Conferenc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re results of government efforts to meet those problems and carry out effective nation's library policies. In other part, Congress authorized to open the White House Conference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efore 1978 to make a recommendation fostering the library use. It is expected that the elected President Carter will put more efforts in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LSA and LSCA were mainly pushed ahead by Democratic Party.

In conclusion I could find some factors through these analysis that would be of some help to develop nation's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